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생략)	<p><신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서울시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기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이외 단체의 사업을 추가 지원하게 됨으로써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제9조)

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1개 단체 추가지원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방법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를 적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7,500,000천원(연평균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제8조)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소계(b)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 총 비용(b-a)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제8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7,500,000천원(연평균 1,500,000천원)

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 ≙ 7,500,000천원

-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 = $\sum_{i=1}^5$ (연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1,500,000천원

※ 연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는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사업(17억 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육성사업(13억) 등 기 추진 사업 예산 평균 금액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 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비(제8조)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합 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경제정책과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